

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(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예외규정 및 제한기간 기준 규정 신설)

나.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(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 및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)

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\*

### 가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(2025/4/22 개정·2025/4/23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당이익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4. 10. 22. 공포, 2025. 4. 23. 시행)에 따름

#### 2) 주요 내용

-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적용이 안되는 예외거래를 규정(제55조의3)
  -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7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른 거래 제한의 예외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규정
    - 공로금·장려금·퇴직금 등으로 지급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
    - 타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거래
    - 그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낮다고 인정하는 거래
-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, 상장사 임원선임·재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규정 신설(별표 2호의4)
  -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기간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제한기간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 기간을 정함
    -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하여 제한기간을 산출
    - 산출한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-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간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긴 제한기간을 부과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조치 대상자 또는 위반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
  -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지체없이 시정,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
  -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,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수한 경우
  -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,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형벌, 과태료,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
  -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 보호,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,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경고·주의조치로 갈음
  -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해당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 전력(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 또는 증선위로부터 조치를 받았거나,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)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감면

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(별표3 제2호 나목, 제3호)

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(별표4 제4호)

-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
  -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 × (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 /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)

## 나.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(2025/4/22 개정 · 2025/4/23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, 위반행위자 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

### 2) 주요 내용

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(별표 2 제4호 나목)

- 직전 기준가격(0시, 8시, 16시 가격)이 없는 경우, 위반행위 개시 시점의 가격을 사용

□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(별표 4 제2호 나목)

—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·수사기관 통보 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

□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정비(별표 5 제2호의2)

—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,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